

[붙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청약통장요건은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500%이상 선정하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업지의 자세한 사항은 분양 상담전화(☎032-327-2008) 및 공식 홈페이지(<https://부천소사본1-1구역.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소사본1-1구역(가칭)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I. 공급개요

- **단지명** : 부천 소사본1-1구역(가칭)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8층, 지상49층, 7개동, 총 1,728세대 중 일반분양 1,1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33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115세대]

- **입주예정**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059.9400A	59A	59.9400	27.5508	87.4908	62.3617	149.8525	321	176	145
	059.9800B	59B	59.9800	26.2836	86.2636	62.4033	148.6669	170	93	77
	074.9500A	74A	74.9500	34.7715	109.7215	77.9782	187.6997	156	84	72
	074.9900B	74B	74.9900	33.6743	108.6643	78.0198	186.6841	160	88	72
	084.9500A	84A	84.9500	38.7698	123.7198	88.3822	212.1020	105	56	49
	084.9400B	84B	84.9400	37.0667	122.0067	88.3717	210.3784	246	136	110
합 계								1,158	633	525

구분			주택형((약식표기))						합계
			59A	59B	74A	74B	84A	84B	
기관추천 세대수 배정	국가유공자 등		7(35)	3(15)	3(15)	3(15)	2(10)	5(25)	23(115)
	장기복무 제대군인		2(10)	2(10)	1(5)	1(5)	2(10)	2(10)	10(50)
	중소기업 근로자		7(35)	3(15)	3(15)	3(15)	2(10)	5(25)	23(1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35)	3(15)	3(15)	3(15)	2(10)	5(25)	23(115)
	장애인	경기도	7(35)	3(15)	3(15)	3(15)	2(10)	5(25)	23(115)
		서울특별시	1(5)	1(5)	1(5)	2(10)	-	1(5)	6(30)
		인천광역시	1(5)	2(10)	1(5)	1(5)	-	2(10)	7(35)
합 계			32(160)	17(85)	15(75)	16(80)	10(50)	25(125)	115(575)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II.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정 (예정)	비 고
대상자 명단 회신	2026년 08월 05일(수) (시간 : 12시까지)	*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07월 31일(금)	* 당사 홈페이지(https://부천소사본1-1구역.com)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개관	2026년 08월 07일(금)	* 장소 : “부천 소사본1-1구역(가칭)”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번지]
특별공급 청약신청	2026년 08월 10일(월) (시간 :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08월 19일(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	2026년 08월 22일(토) ~ 08월 25일(화) (4일간) (시간 : 10:00 ~ 17:00)	* 장소 : “부천 소사본1-1구역(가칭)”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번지]
계약 체결	2026년 08월 31일(월) ~ 09월 02일(수) (3일간) (시간 : 10:00 ~ 17:00)	* 장소 : “부천 소사본1-1구역(가칭)”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번지]

※ 상기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미등록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서류는 폐기합니다.

※ 대상자 통보 :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하여 회신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금액 요건을 갖추신 분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입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습니다.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

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기 시키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1회 특별공급 간주),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부천소사본1-1구역.com>

■ 분양문의 : T. 032)327-2008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